영등포구의회 제19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

2017. 3. 3.

社會建設委員會專門委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討報告

1. 경 과

의안 제204호로 2017년 2월 22일 윤준용의원 외 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무단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조항 신설(안 제2조제2항제11호)
- 나.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(안 부칙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주차장법」제8조(노상주차장의 관리), 제8조의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,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, 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
-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상향 조정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O 주요내용은

2017년 7월 1일부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현재 공영노상주차장 4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2급지 기준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으로 상향하는 것임.

- 「주차장법」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요금 외의 가산금 부과 대상 및 부과 방식 등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이 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무단주차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무단 주차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.
- 그러나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및 가산금 상향조정은 형평성과 무단주차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아울러 도심 화물차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차량 및 건설기계의 전용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『주차장법』

제8조(노상주차장의 관리)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・광역시장,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・광역시장,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(이하 "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"라 한다)가 관리한다.

-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[전문개정 2010.3.22.]

제8조의2(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6.8.>

- 1.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
- 3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
- 4.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
- 5.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-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<u>「도로교통법」 제35조제3항</u>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10.3.22.]

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(이하 이들을 합하여 "노상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1.6.8., 2016.1.19.>

-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</u>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\underline{x} 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.
- 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"주차요금등"이라 한다)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
-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 등의 징수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0.3.22.]

제10조(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. <개정 2011.6.8., 2013.3.23., 2016.1.19.>

- 1.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
- 2.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
- 3.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<u>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</u>차와 경형자동차,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
-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3.22.]

제14조[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] ① <u>제13조</u>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(이하 "노외주차장관리자"라 한다)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

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 <개정 2016.1.19.>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<신설 2016.1.19.>

[전문개정 2010.3.22.]

■『주차장 시행규칙』

제6조의2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)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 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7.27.>

- 1.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- 2.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
- 3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- 4. <u>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3조제1항</u>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- 5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\underline{x} 례로 정한다.[전문개정 2010.10.29.]